#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홍준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8 발의연월일: 2020. 9. 21.

발 의 자 : 홍준표 • 추경호 • 김형동

김승수 · 홍석준 · 윤상현

한무경 • 박성중 • 배현진

최승재 • 윤두현 • 최연숙

구자근 • 조수진 • 조명희

유재옥 · 이만희 의원

(1791)

###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 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관문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

나아가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의 주요 도시와 대구통합신공항을 연

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통합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조).
- 나.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 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 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 조).
- 다.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안제29조 및 제30조).

- 마.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34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 사.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 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 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 아.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 등의 사무를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구통합신공항"이란 대구 군 공항(K-2) 및 대구 국제공항을 이 전하고 건설되는 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함)을 말한다.
- 2.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 3.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4.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의 이

전을 포함한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

- 나. 통합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 시설 등의 조성
- 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건설
-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토지용도"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
  -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의 복합공항

- 2.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중남부권의 관 문공항, 지방중심의 내륙공항 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통합신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확충
- 3.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 비행장 규모
-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 5.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 릭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등

- 제7조(군 공항 이전) K-2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이전절차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민간공항 이전)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 제9조(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 ① 군 공항 대체시설로 기부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후 양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의 시설규모를 고려한 이전시설의 소요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사업(이하"이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
-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11조(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군 공항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 1.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재산의 가액 범위에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 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대 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세출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국방·군사시설의 사업시행

- 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 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을 제외한 민간공항 개발사업시행자는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 외의 자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4. 공정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기간
  -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 2.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 3.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
- 4. 제1항제6호의 계획 및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

- 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 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 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고시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

- 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 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5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라 한다)는 이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②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1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률에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1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자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수용계획
  - 2. 토지이용계획
  - 3.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 4. 교통처리계획
  - 5. 도시문화계획

- 6. 경관계획
- 7. 환경보전계획
-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10.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12. 재원조달계획
- 13. 종전부지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1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종전부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19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 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규정에 따른다.
-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사·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
-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 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 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 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 에 관한 협의
-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 획의승인
-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
-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 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2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 가 또는 신고
-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 3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9.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 ②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21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 ②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 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 제23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개발사업 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등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기간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제20 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0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25조(공사완료의 공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받으려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조성토지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

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통합신공항건 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 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원형지개발자는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 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주변지역(종전부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종전부지 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추진기구

제29조(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8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2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 5.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6.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과 10명 이내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통합신공항건설청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 다.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통합신공항건설청의 설치 등)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둔다.
  -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에 청장 1명과 본부장 2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한다.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1조(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업무)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 4.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 6. 제27조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 7.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 8.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역 내 토지 등을 이용 한 수익사업
- 9.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3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자문을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3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그 업무수행

-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 제34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정부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 발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민간자본 유치)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할 수 있다.
- 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하천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환경개선비용 부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협력기업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
-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 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 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38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을 50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통합신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 전부지 개발사업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 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 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2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 개발 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3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

-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 제44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5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청장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 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46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7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4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 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49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통합신공항건설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제51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 ②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 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 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④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통합신공항건설청"으로 본다.
- ⑤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본다.

- ⑥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제52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으로 본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 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 무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 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 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 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 사계획의 승인·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 10.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에 관한 사무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분양 등에 관한 사무
-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절용허가·등의 기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등에 관한 사무

- 1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 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

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보관·열람, 지적공부의 복구·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 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신공항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③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도교 육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한다.
  -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 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 · 심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고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1항단서, 제43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단서, 제61조제1항, 같은조 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 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 제3항각호외의부분, 같은창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항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후단, 같은항제7호, 같은조 제5항, 같은조 제7항후단및 제72조제5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한사항은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통합신공항건설 및 종전부지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 저말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54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한다.

- 제55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 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 제56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 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23조에 따른 광역기 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통합신공항건설청 장"으로 본다.
-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 전부지 개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권한은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일부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59조(감독)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2. 제21조제1항·제7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0조(보고·검사 등) ①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 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